

이용계약에 관한사항

제9조(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 목적

노인 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기관은 수급자 김심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본 장기 요양 기관을 이용토록 하며, 이에 수급자는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 1) 수급자 관리 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 2) 계약 이행 과정에서 발생 할 수 있는 계약 당사자 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한다.
- 3)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질 높은 요양 서비스를 제공한다.

2. 서비스 계약 체결

- 1) 신청자에게 서비스 제공 계획수립 내역을 알리고 서비스 제공 전 신청자나 그 가족과 서비스 계약을 체결한다.
- 2) 신청자가 기초 수급자 이거나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계약 체결 전 반드시 수급자 주소지 관할 시, 군,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3) 서비스 계약 체결 후 계약 내용을 공단에 통보한다.

3. 계약 기간

- 1) 계약 기간은 장기 요양 인정서 유효기간 범위로 하며,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유효기간이 만료 된 경우 에는 재계약함을 원칙으로 한다.
- 2) 급여비용 산정 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장기 요양 급여 비용이 변경되어 그 내역을 수급자나 보호자에게 서면, 전자적 방법, 직접 전달 등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계약 내용이 변경 된 것으로 본다.
- 3) 등급 변경 또는 계약 기간 종료, 자기 부담 비용의 변경 시에는 재계약 할 수 있다.
- 4) 노인 장기 요양 보험 비 대상자의 경우 계약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 5)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 부담액은 “별첨”과 같이 한다.

4. 서비스 품질 보장

- 1) 비밀보장: 이용자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업무상 알게 된 정보는 비밀을 보장한다.
- 2) 기록 및 공개: 이용자에게 제공한 서비스에 관한 내용을 상세히 기록하여 이용자나 그 가족이 요구할 경우 공개 하여야 한다.
- 3) 부당 청구 금지: 이용자의 요구와 문제점, 기능 상태를 고려하여 규정된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 하여야 하며, 과다 서비스 제공과 부당 청구를 하지 않는다.

5. 월 이용료 및 비용 부담액

수급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40조에 따른 본인 부담금과 시행규칙 제 14조의 비 급여비용 및 기타 비용으로 하며 ‘장기요양급여 제공 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 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산정한다.

- 1) 본인 부담금은 당해 장기 요양 급여비용의 100분의 15로 한다.
- 2) 기초 생활 수급자는 본인 부담금 전액을 면제한다.
- 3) 의료급여 수급자 등 감경 대상자는 40%-60%를 경감한다.
- 4) 법정 본인 부담금은 할인이나 감경 행위를 할 수 없다.
- 5) 수급자의 요구에 의해 제공되는 비 급여 항목에 대하여는 별도로 비용을 산정하여 청구 할 수 있다.
- 6) 본조 5항의 비급여와 기타 비용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를 따른다.

*본인 부담금 외 비용은 전액 본인 부담으로 하며, 비급여 비용은 시설장이 정한다.

*서비스 중 의료 기관 이용으로 발생하는 병원 관련 비용은 수급자 본인이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수급자나 보호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요구자가 부담한다.

*재가 급여는 장기 요양 등급별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이용하여야 하며, 월 한도액을 초과한 비용은 수급자가 전부 부담한다.

6. 비용 부담의 고지 및 수납관리

- 1) 기관은 전월 1일부터 말일 까지의 이용료를 정산하여 시행 규칙 서식 ‘장기 요양 급여 비용명세서’를 활용해 익월 10까지 그 부담 내역을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고지 한다.

2) 수급자나 보호자는 고지된 이용료를 이용 익월 15일까지 기관 계좌에 입금함을 원칙으로 한다.

3) 기관은 ‘본인 부담금 수납 대장’을 비치하여 매월의 수납상황을 관리하고, 미납된 경우 에는 다음과 같이 조처한다.

60일 이상 연체시; 독촉 안내(고지, 유선, SMS 등)

6개월 이상 연체 시; 내용증명 우편으로 최고

장기간 미납 시; 소액 심판 청구 소송 제기

7. 이용료 등의 변경 사유 및 정차

1) 이용료 및 기타 비용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변경될 수 있다

보건복지부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고시한 장기 요양 급여 수가가 변경된 경우

수급자의 장기 요양 등급이 조정된 경우

위 법 시행규칙 제 14조에 따른 비급여 항목의 비용이 변경된 경우

본인 부담금의 감경 결정으로 부담률이 조정된 경우

수급자의 건강 상태나 환경의 변화로 급여 제공 시간, 횟수나 방식이 변경된 경우

기타 관계 법령, 고시 또는 행정 지침에 따라 비용 조정이 필요한 경우

2) 이용료가 변경될 경우, 기관은 그 내용을 확인 후 지체 없이 수급자나 보호자에게 아래 방법 중 하나 이상으로 고지 한다.

서면(문서 또는 우편)

전자적 방법(이메일, 문자, 메신저 등)

직접 전달(방문시 설명 및 서면 교부)

3) 이래 각호로 인한 변경의 경우 재계약 없이 통보만으로 계약 변경 효력이 발생한다.

공단 고시 수가의 인상 또는 인하

감경을 조정 등 행정 지침에 따른 조정

4)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관은 수급자나 보호자와 서면합의로 재계약을 체결하거나 기관 서류 등에 변경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장기 요양 등급의 변경

급여 제공 시간 및 횟수의 개별조정 등 이용자 상황에 따른 변동

5) 이용료 변경에 따른 정산이 필요한 경우, 기관은 변경 적용일 기준으로 이

용료를 재산정하여 초과액은 환불하고 부족액은 사전 안내 후 수납한다.

제10조 (계약당사자의 권리 및 의무)

서비스 제공자와 서비스 이용자(수급자) 및 보호자 간에 다음 각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 한다.

1. 서비스 제공자의 의무

- 1) 표준 서비스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 2) 수급자에게 안전한 생활 여건을 조성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단, 병 의원 입원 시는 간호, 간병을 제공하지 않는다)
- 3) 수급자의 신변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보호자에게 연락하여야 한다.

2. 수급자의 의무

- 1) 월 이용료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 2) 보호자 인적 사항 및 연락처 변동 시에는 즉시 통보해야 한다.
- 3) 방문목욕 서비스를 주선한 경우, 수급자 및 보호자는 건강상의 이상 증세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고 질문에 성실히 답변 해야 한다. 또한, 건강상 좋지 않다고 판단 될 때에는 목욕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3. 수급자의 권리

- 1) 개개인의 사생활은 존중되고 보호받는다. 또한 비밀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
- 2) 종교와 문화 활동의 자유를 가진다.
- 3) 생활 제 영역에 있어 수급자는 본 기관에서 제공하는 적절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 4) 수급자의 간호와 재활 서비스가 보장되며 그 치료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 5) 수급자는 직원들로부터 부당한 대우에 방치되지 않고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평등, 존경을 받을 권리가 있다.
- 6) 안전하고 쾌적하며 가정적인 환경 속에서 자유로이 생활할 권리가 있다.
- 7) 수급자는 친지들과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사회활동을 참가할 권리가 있다.

8) 본 기관에서 생활 중 불편한 사항에 대하여 개선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4. 신원 인수인의 의무

- 1)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 2) 수급자의 본이 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이용 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 3) 건강 상태 이상 및 인적 사항 등 변동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 4) 장기 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을 선정, 통보할 의무가 있다.
- 5)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 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5. 신원 인수인의 권리

- 1)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 요양 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과 건강 등 이용자 신변에 관한 정보를 알 권리가 있다.
- 2) 서비스 급여계획 및 급여 계약을 결정할 권리를 가지며, 계획에 따른 적정 급여제 공이 이루어졌는지 확인할 수 있다.
- 3) 기관이 실시하는 상담이나 욕구사정 과정을 통하여 급여 제공에 관해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 4) 기타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제11조 (계약의 해지)

1. 계약 해제

서비스 이용계약은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해제할 수 있다.

2. 계약 해지

다음 각호에 해당 하는 경우, 기관장은 수급자나 보호자에게 계약 해지를 요청하거나 통보할 수 있다.

- 1) 계약 기간이 만료된 때
- 2)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한 때
- 3) 수급자의 건강검진 또는 진단 결과 전염성 질환의 보균자 또는 감염자로 판정된 때
- 4) 수급자 또는 보호자가 수급자의 건강, 병력 등과 관련된 중요 정보를 고의로 은폐한 사실이 확인된 때

- 5) 수급자의 건강 악화로 계약된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때
- 6) 3회 이상 이용료 (본인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는 등 기관 규칙이나 기관의
정당한 조치를 따르지 않아 기관 운영에 지장을 초래한 때
- 7) 수급자나 보호자 및 가족이 급여 제공자(직원)에게 폭행 폭언 성희롱 등 인
권침해 행위를 하는 때

3. 정산 처리

계약 해제 시 기관은 수급자의 부담금 등 납부한 비용 중 잔액이 있는 경우
이를 정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